



암 산정특례 등록 시 오류사례

□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

-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(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확진한 환자가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('19.3월)
 - 암 질환별로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 제시,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환자는 예외기준 마련 운영
-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중 환자의 신체 상태가 등록기준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예외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함
 - 암 산정특례 등록 예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(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른 예외 적용이며 임의로 검사기준을 규정할 수 없음)

□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

- 고령, 환자 조직(세포)학적 검사 거부로 예외적용 등록
 - 환자가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신체적 상태인 경우로 예외등록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만 등록가능
- CT상 잔존암 확인, 조직검사 시행예정 등으로 등록
 - 환자상태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조직검사를 생략하는 경우 등록 불가
 - 영상검사로는 암 질환이 의심되나 조직검사 시행이 불가하여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등록 불가
 - 영상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등록기준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불인정
-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검사받은 검사결과로 재등록
 -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(종료3개월 전부터 종료시점) 재등록 시에도



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 가능하나 특례적용기간 검사결과로
확진 또는 검사 없이 확진 재등록할 수 없음

- (재등록)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유효

- ❖ 재등록 대상은 잔존암, 전이암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암조직의 제거·소멸을 목적으로 ① 수술, ② 방사선·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③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이며,
- ❖ 재등록 시에도 등록기준 검사를 실시 후 확진 하여야함

○ 등록기준 검사결과 확인 전 확진 등록

- 등록기준 검사의 결과 확인 전 환자의 내방일자로 확진 산정특례 등록 불가

○ 기타

-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잔존암, 전이암이 없는 상태에서 재등록 불가
- 조직(세포)학적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환자를 예외적용 등록검사로 확진등록 불가
- 외국의료기관 검사결과로만 확진 등록 불가

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

① 대상 : 등록기준이 조직(세포)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

- ▷ 환자 상태가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 의사가 판단한 경우
-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
 - ECOG performance status 3: 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
 - ECOG performance status 4: 완전히 무력한 상태,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
 -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
 - 심혈관계·뇌혈관계 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중인 환자에서 항응고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
 - 혈중 혈소판 10만 미만인 경우
 - Prothrombin time증가(60%미만)한 경우
 - 암이 주요혈관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
 -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
 - 지속적인 활력징후 불안정
 - 수축기 혈압 90mmHg이하의 쇼크
 - 혈압 180/100mmHg이상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
 - 호흡수 30회/분 이상의 빈호흡
 - 조절되지 않는 고열
 -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90%미만의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
 - 환자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호르몬 변화가 안정적이지 못해 침습적 검사나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
 -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
 - 혈액학적 검사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가 1,000미만인 경우
 - ⑤ 기타
 -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(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)에 잔존암, 전이암이 있거나,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
 - 암조직의 제거·소멸을 목적으로 수술, 방사선·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,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
 -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애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
 -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
 -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

② 적용방법 : 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암 진단 후 “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”에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및 환자상태 및 확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서 발급